

경운대학교 겸임교원임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교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겸임교원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무내용이 경운대학교에서 담당할 교육 또는 연구내용과 유사하여 본직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직위 구분) 겸임교원의 직위는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겸임교수, 겸임부교수, 겸임조교수로 구분한다.

제4조(자격) 겸임교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겸임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14년 이상인 자
2. 겸임부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3. 겸임조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삭제”

제5조(임용절차) 겸임교원은 해당 학부(과)장이 학부(과)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본직 기관장의 동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6조(임용기간) ① 겸임교원은 매학기 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임용기간의 갱신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행하여야 한다.

제7조(구비서류) 겸임교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겸임교원 임용추천서 1부
2. 이력서 1부
3. 학력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 각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재직기관장 동의서 1부

제8조(임무) 겸임교원은 주당 3시간 이상 9시간 이내의 강의(실험실습 포함)를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강의 시수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면직) ①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8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3. 기타 소속 학부(과)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4. 수업관리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부(과)장은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겸임교원의 면직을 내신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 ① 겸임교원은 주당 강의시간에 따라 급료(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겸임교원은 경운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겸임교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